

## 2026년 우수·모두에 마을기업 모집 공고

행정안전부 「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6년 충청남도 우수·모두에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9일

충청남도지사

### 1. 공고개요

○ (기 간) 2026. 2. 9.(월) ~ 2026. 2. 25.(수) / 17일간

○ (신청대상) ※ 기존에 우수·모두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

- [우수 마을기업] 마을기업 4개 요건을 충족하고, 우수한 실적이 있는 마을기업으로서 2회차(재지정)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
- [모두에 마을기업]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으며,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
- ▶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, 3회차 (고도화)사업비를 지원 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한 마을기업

○ (보조금 지원) 우수 최대 7천만원, 모두에 최대 1억원

- 보조금의 20% 이상 자부담 필수

예시) 우수 마을기업 총사업비 8.4천만원(보조금 7천만원 + 자부담 1.4천만원)

- 기업별 지원액은 행정안전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

※ '26년도 道, 시·군, 정부예산(안)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

- 부담비율 : 국 50%, 도 15%, 시·군 35% 보조금의 20% 이상 자부담 필수

○ (지원 내역)

- 재정지원 : 제품 개발, 홍보·마케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

※ 사업비는 제품 개발, 기반 설비 확충, 홍보·마케팅, 컨설팅 등으로 사용 권장

- 판로지원 : 대형 쇼핑몰(온라인 + 오프라인) 입점 우선 추천  
(유통업체 입점 지원, 판촉 행사, 유통·마케팅 컨설팅 등)

- 홍보지원 :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, 우수사례 소개 등

2. 지정요건 (4가지)

○ (지역성)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 (읍·면·동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
지정요건	
1	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·운영되어야 함
2	지역에 소재하는 자원(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)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
3	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4	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- 지역주민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-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
❖ **지역의 범위(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)**

- '읍·면·동'을 기본으로 함(행정동 기준,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)
  -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, 예외적으로 '시·군·구'까지 확대하고 주민(시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8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    - 단, '인구감소지역'은 주민(시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    - '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,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·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- ※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,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

○ (기업성)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

지정요건	
1	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
2	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-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, 인적·기술적 역량*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* 회원의 경력·경험, 사업에 필요한 인·허가, 자격증 보유
3	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- 광역자치단체(道)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(단,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)

○ (공동체성)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
지정요건	
1	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-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과 법인 회원(출자자)이 동일해야 함 -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-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
2	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-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※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
3	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4	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
5	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(출자자)은 출자금액*을 최대한 공평(균등)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이고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의 지분 합은 50% 이하여야 함 * 특수관계인 :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 형제·자매

○ (공공성)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

지정요건	
1	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·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2	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, 일자리 및 소득 창출,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3	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
4	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주민총회,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·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
5	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-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-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

### 3. 의무교육 이수

대상	교육명 (교육시간)	이수인원	교육 시기	교육내용(안)
우수 모두애	전문교육 기본 (4시간)	회원 5인 이상 (대표자 포함)	광역(道) 심사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(홍보, 마케팅, 브랜드 관리, 서비스, 기획, 개발 등)</li> <li>▸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</li> <li>▸ 사업계획서 작성</li> </ul>

○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마을에듀([www.우리마을에듀.org](http://www.우리마을에듀.org))

온라인 교육 활용

- 문의 :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(☎041-456-8132~4)

※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(전문교육) 이수하지 못한 경우, 광역(道)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(미제출 시 심사 제외)

#### 4. 신청 및 접수

○ (신청기간) 2026. 2. 9.(월) ~ 2. 25.(수) / 17일간 ※기한 엄수

○ (신청방법) 기업 소재지 시군청 방문신청(평일 09:00~18:00/주말, 공휴일 제외)

- 사업신청서, 증빙서류 방문 및 이메일\*(한글,PDF) 모두 제출

\* 접수처 시군 담당자, 별도 문의

○ (제출서류) ※ 작성기준은 현재 기준

구분	신청 서류	
기본 서류	공 통	① 사업신청서(우수·모두에 마을기업별 지원 서식) ② 마을기업 임원 현황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(출자금 포함) (마을기업 출자자와 법인 출자자가 동일해야 함/ 시군담당자 마을기업 회원 소재지 확인 必) (지역주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 ④ 법인등기부등본(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) ⑤ 정관 ⑥ 자부담 통장 ⑦ 사업자등록증(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) ⑧ 전문교육(기본) 이수 확인서(대표 포함 5인 이상) 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
	추 가	① 3개년('23~'25)재무제표, ② 실적보고서(前회차), ③ 정산서류 (前회차)* ④ 심사기준 공동체성 등 4가지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(증빙자료 서식 참고 필수)
	(회차별) 모두에	① 5개년('21~'25)재무제표, ② 실적보고서(前회차), ③ 정산서류 (前회차)* ④ 심사기준 지역의영향력 등 6가지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(증빙자료 서식 참고 필수)
기타 증빙 서류	① 기타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기타 기업이 신청서 내용 증빙을 위한 기타 증빙자료 ③ 인허가 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: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)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(계약기간 명시)	

\* 2·3회차 마을기업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, 시군에서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·검토 (e-나라도움)하고 그 결과를 '시군종합의견'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

## 5. 심사기준

### ○ 우수 마을기업

심사항목	배점	구분	심사지표
공동체성	30	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주민,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효과</li> <li>▪ 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, 네트워크 확장 및 효과</li> </ul>
공공성	20	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역문제 해결 기여, 지역사회 공헌 및 효과</li> <li>▪ 지역주민(구성원) 간 상호 도움 및 갈등 해소 기여</li> </ul>
기업성	20	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, 판로 개척</li> <li>▪ 마을기업 홍보 및 로고 활용 내용</li> </ul>
지속성	20	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</li> <li>▪ 지속가능한 매출 규모 및 사업 다변화 노력</li> </ul>

### ○ 모두에 마을기업

심사항목	배점	구분	심사지표
지역의 영향력	10	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역 일자리 지원 및 공헌도</li> <li>▪ 지역 자원의 활용 및 지역문제 해결 성과</li> </ul>
조직의 안정성	10	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조직의 성장 및 의사결정 구조</li> <li>▪ 구성원의 역량강화, 기업서장에 지출한 비용</li> </ul>
기업의 안정성	25	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업의 매출증가 추이 및 자산 규모</li> <li>▪ 생산 인프라 및 인적역량</li> </ul>
기업의 확장성	25	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유통기반 구축 현황 및 실적</li> <li>▪ 보유상품의 경쟁력, 지속 가능성</li> </ul>
기업의 스타성	20	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상품의 독창성, 독특한 디자인, 실용성, 가격 경쟁력 등</li> </ul>
계획의 적절성	10	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예산편성의 적절성, 실행 가능성</li> <li>▪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</li> </ul>

## 6. 추진일정(안)

추진내용	추진기간	비 고
공고(道) 및 접수(시군)	2026. 2. 9.(월) ~ 2026. 2. 25.(수)	희망 마을기업 → 시·군
신청단체 서류검토	2026. 2. 26.(목) ~ 2026. 3. 6.(금)	시·군, 지원기관
추천서, 서류제출 등 추천	2026. 3. 9.(월)	시·군 → 道
道 심사위원회 개최.선정	2026. 3월 中	道
선정기업 행안부 추천	~ 2026. 3. 27.(금)	道 → 행정안전부
최종 심사 및 지정	2026. 4월 中	행정안전부

## 7. 제외 대상사업 및 단체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 
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  
받는 경우
 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 
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
  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 
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 -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 
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 
받은 경우

-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  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 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  -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
    - ※ 신규·재지정·고도화 마을기업, 재도약, 우수, 모두애(愛)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
  - 그 외 道, 시군에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## 8. 기타사항

-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,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,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,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」에 따릅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마을기업 소재지 시·군 담당부서(아래 문의처 참고),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(☎041-456-8132~4),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(☎041-635-22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(문 의 처)

기관	부 서	전화번호	기관	부 서	전화번호
천안시	일자리경제과	041)521-5612	금산군	경 제 과	041)750-3023
공주시	경 제 과	041)840-8314	부여군	경 제 교 통 과	041)830-2263
보령시	지 역 경 제 과	041)930-3722	서천군	경 제 진 흥 과	041)950-4120
아산시	일자리경제과	041)530-6049	청양군	사회적경제과	041)940-4074
서산시	일자리경제과	041)660-3218	홍성군	경 제 정 책 과	041)630-1355
논산시	지 역 경 제 과	041)746-6027	예산군	경 제 과	041)339-7283
계룡시	경 제 산 업 과	042)840-2494	태안군	경 제 진 흥 과	041)670-2708
당진시	기 업 육 성 과	041)350-4573	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(마을기업팀)		041)456-8132~4